



보도시점 2025. 7. 8.(화) 11:00
<7.8.(화) 석간>

배포 2025. 7. 7.(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방안 마련

- 비전공·경력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 마련
- 중급 기술자로서 필요한 역량 육성을 위해 중급 양성교육 및 평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천볼트에서 10만볼트까지)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은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현장경력(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되어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성상훈 (044-203-3895)

□ **주요 내용**

- 비전공 경력자에 대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마련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시행령 개정 전·후)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전공자	비전공자
개정전	① 기사 + 2년 경력 ② 산업기사 + 5년 경력 ③ 기능사 + 8년 경력	① 석사 + 5년 경력 ② 학사 + 7년 경력 ③ 전문학사 + 9년 경력 ④ 고등학교 + 11년 경력	인정 불가
개정후	① 기사 + 2년 경력 ② 산업기사 + 5년 경력 ③ 기능사 + 8년 경력	① 석사 + 5년 경력 ② 학사 + 7년 경력 ③ 전문학사 + 9년 경력 ④ 고등학교 + 11년 경력	① 학사 이상 + 9년 경력 ② 전문학사 + 12년 경력 ③ 고등학교 이하 + 15년 경력

-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중급 기술자로서 역량을 검증

* (안) 양성교육 수료자 대상 온라인 평가 실시(무료), 교육 후 3회까지 응시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전기공사업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개정 및 본격 시행(10월)

*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 세부사항 규정

< 참고 : 현장경력 기준 >

인정비율	업무내용
100%	①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
80%	①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 ② 전기직렬 공무원(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 업무 수행) ③ 학교 등에서 전기 관련 교원으로서 전기 시공에 관한 교육업무 수행
50%	①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 수행 ③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